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 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

2000. 4.19.  
교육사회위원회

## 1. 심 사 경 과

- 가. 제안일자및제안자 : 2000년 4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0년 4월 3일
- 다. 상정일자 : 2000년 4월 19일 (제172회 임시회 제1차교육사회위원회) 상정 심사의결

## 2. 제안설명요지 (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 가. 제안이유

- 대통령령인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의 개정으로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이 조정됨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과 근무상한연령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4조제3항 및 안 제8조제1항)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담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시킬 수 있던 조항을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의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권면직시킬 수 있도록 직권면직 조항 강화 (안 제10조제1호)
-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휴직을 명하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조정 (안 제11조)

- 군입대에 의한 휴직기간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명시  
(안 제11조의2)
- 휴직의 효력조항 신설 (안 제11조의3)  
휴직중에는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군입대 휴직후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지체없이  
복직

### 3.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김동윤)

- 인사운영의 실적주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직·기능직공무원 등의 정년이 단축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근연령도 일부 단축하기 위하여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대통령령 제15956호)이 개정(1998년 12월 31일) 됨에 따라
- 비상계획 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총무처예규 제326호, 97.12.29) 에 의하도록 하고,
- 비상계획 업무담당 5급상당이하 근무상한 연령을 55세로 하는 등 비상대비업무담당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이 조정됨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질의및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 안 가 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 타 필 요 한 사 항 : 없 음

9. 첨 부 서 류

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  
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은 국가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일반직 상당 계급별 연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규정된 휴가기간이 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5급상당)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임용자격) ①~②(생략)</p> <p>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 부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교육감이 별 도로 정할 수 있다.</p> <p>(단서 신설)</p>	<p>제4조(임용자격) ①~②(생략)</p> <p>③제2항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 부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교육감이 별 도로 정할 수 있다.</p> <p>(단서 신설)</p>		<p>제4조(임용자격) ①~②(현행과 같음)</p> <p>③.....</p> <p>.....</p> <p>.....</p> <p><u>다만,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 한 기준에 의한다.</u></p>		<p>제4조(임용자격) ①~②(현행과 같음)</p> <p>③.....</p> <p>.....</p> <p>.....</p> <p><u>다만,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 한 기준에 의한다.</u></p>		<p>제8조(근무상한연령) ①(생략)</p> <p>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 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 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p> <p>(단서 신설)</p>	<p>제8조(근무상한연령) ①(생략)</p> <p>제8조(근무상한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 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 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p> <p>(단서 신설)</p>		<p>제8조(근무상한연령) ①.....</p> <p>.....</p> <p>.....</p> <p><u>다만,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은 국가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일반 직 상당 계급별 연령으로 한다.</u></p>		<p>제8조(근무상한연령) ①.....</p> <p>.....</p> <p>.....</p> <p><u>다만, 비상계획업무담당 별정직공무원은 국가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일반 직 상당 계급별 연령으로 한다.</u></p>	
<p>②(생략)</p> <p>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 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p> <p>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 를 수행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p> <p>2.~3.(생략)</p>	<p>②(생략)</p> <p>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 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p> <p>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 를 수행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p> <p>2.~3.(생략)</p>		<p>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 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p> <p>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직무 를 수행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p> <p>2.~3.(생략)</p>		<p>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 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p> <p>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충청북도교육 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규정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 한 지장이 있을 때</p> <p>2.~3.(현행과 같음)</p>		<p>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 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p> <p>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충청북도교육 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규정된 휴가기간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 한 지장이 있을 때</p> <p>2.~3.(현행과 같음)</p>						
<p>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p>1.~2.(생략)</p> <p>(신 설)</p>	<p>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p> <p>1.~2.(생략)</p> <p>(신 설)</p>		<p>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 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 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p>1.~2.(현행과 같음)</p>		<p>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 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 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p>1.~2.(현행과 같음)</p>		<p>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 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 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p> <p>1.~2.(현행과 같음)</p>						
<p>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 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p>	<p>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 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p>		<p>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 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p>		<p>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 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p>		<p>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 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p> <p>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p>